

분만취약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 안내

구분	세부내용																		
변경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취약지(37곳) 거주 임신부의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변경 <현행> 일태아 50만원(다태아 70만원) → <변경> 일태아 70만원(다태아 90만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일이 2016.7.1.일 이후 ▶ 시행일(2016.7.1.)이전 신청자는 등록(카드) 취소(해지)하여도 추가지원 안됨 ②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주소가 분만취약지역인 경우 ③ 분만취약지역에 주민등록기간이 30일 이상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단,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분만취약지이나, 주민등록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이 되는 날 이후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p>																		
해당 분만취약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만취약 지역 ... 37개 지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15%;">시도</th> <th style="width: 85%;">시군구</th> </tr> </thead> <tbody> <tr> <td>인천(1)</td> <td>옹진군</td> </tr> <tr> <td>강원(7)</td> <td>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td> </tr> <tr> <td>충북(2)</td> <td>보은군, 괴산군</td> </tr> <tr> <td>충남(1)</td> <td>청양군</td> </tr> <tr> <td>전북(4)</td> <td>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td> </tr> <tr> <td>전남(8)</td> <td>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td> </tr> <tr> <td>경북(8)</td> <td>영천시, 군위군, 의상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td> </tr> <tr> <td>경남(6)</td> <td>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td> </tr> </tbody> </table>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강원(7)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4)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8)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영천시, 군위군, 의상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6)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시도	시군구																		
인천(1)	옹진군																		
강원(7)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2)	보은군, 괴산군																		
충남(1)	청양군																		
전북(4)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8)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8)	영천시, 군위군, 의상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6)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취약지에 사는 내국인 : 기존신청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의사발급) 원본 지참 후 카드사(BC, 롯데, 삼성) 및 아래 해당은행, 공단지사에 방문·우편 신청 <li style="font-size: small; margin-left: 40px;">*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부산, 기업, 우리은행 등 - 분만취약지에 사는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류 미지참 등으로 30일 거주여부가 확인 안되는 경우 : 현행 지원액 선지급 ② 추후 거주여부(30일 이상) 확인되어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추가지원 신청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기간이 확인되는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반드시 공단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 추가지원 신청은 카드사, 은행 신청 불가함에 유의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구비서류는 최근 7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하며, 출입국 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민원24(인터넷)에서 발급 가능합니다.</p>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10px;">※ 신청서 서식 게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보험급여</p>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7월 1일 ※ 시행일 이후에 최초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적용 																		

□ 기타 개선사항

○ 임신확인서 발급시점 명시

- '임신확인서'는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작성 가능 ... 임신확인서 서식(양식) 참조
- * 초기 유산된 경우 등 임신확인을 늦게 해줘서 지원 받지 못했다는 민원 발생으로 전문학회 등 의견수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①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임 신 확 인 서>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② 요양기관 확인	임신확인일	년	월	일
	분만에정일	년	월	일
	다태아구분	<input type="checkbox"/> 일태아 <input type="checkbox"/> 다태아 (<input type="checkbox"/> 쌍태아 <input type="checkbox"/> 삼태아 이상)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 호):	()	
	담당의사(면허번호):	()	(서명 또는 인)

③ 공단 확인	주민등록지	<input type="checkbox"/>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지역
	주민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신청일까지 (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신부와의 관계()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임신부를 대신하여 그 가족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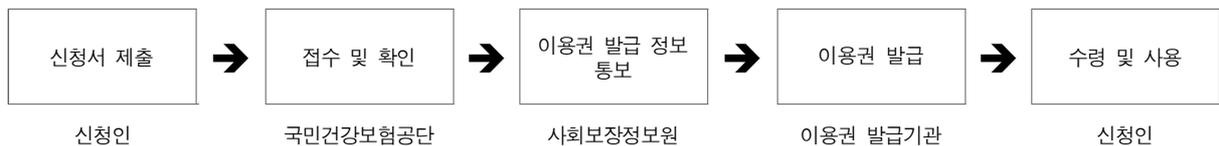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한정됩니다.

1. 배우자 2. 직계혈족 3. 형제자매 4. 직계혈족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혈족 6. 배우자의 형제자매

작성방법

-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으로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신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②: 요양기관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양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임신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재하는 란입니다.

처리 절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신청서

① 임신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②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지가 아래 작성방법에서 열거하는 지역에 해당해야 합니다.	
③ 주민등록 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 년 월 일</p> ※ 전입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의 추가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신부와의 관계() 전화번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임신부가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 해당되며, 최근 7일 이내 발급 건에 한정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임신부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4.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그 대신 신청하는 사람과 임신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임신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한정됩니다..

작성방법

- ①: 임신·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기재하는 란입니다.
- 임신부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 연락처는 자택 및 휴대전화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우선적 기재합니다.
 - 전자우편주소는 임신부의 것으로 기재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 ②: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체류지(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신고된 국내거소를 포함)]를 말합니다]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에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구분	지역	구분	지역
인천	옹진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충남	청양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③: ②의 표에 해당하는 지역에 주민등록된 기간[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체류지로 등록한 기간(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국내거소로 하여 신고된 기간을 말합니다)]을 기재합니다.